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4명)

가. 채용예정분야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고용분야	4명	울산동부고용센터(울산광역시 동구)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고용분야	○ 다양한 국정경험 기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공동업무, 현장활동 지원 등 업무 수행 ○ 취업지원, 실업급여, 기업지원,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센터 업무지원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연령) 공고 최종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최초 지원 시 병적증명서, 전역증 등 제출 필요)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학력, 전공, 성별) 무관

○ (제한사유) 아래 응시 제한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단, 23년~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회 더 참여 가능

※ 참여횟수 확인을 위해 응시원서에 참여이력 기재하고, 원서접수 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인 경우
-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채용결격사유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지침 제25조(채용결격사유)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가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채용 시 가점제(3~10점 내외) 운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고, 허위 기재 시 합격 취소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 또는 10%
사회 형평 가점 (필요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사회형평가점 포함시)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 해당자의 경우 필수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우대 관련 필수 제출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인턴지원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20.(목) 아래 사이트에 게재(면접일정 포함)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 고용노동부울산동부지청 (<http://www.moel.go.kr/local/ulsandongbu/index.do>)
- 나라일터(www.gojob.go.kr)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제안서 주제는 지원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중 자율적으로 선택 (첨부된 ‘2026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자료집 및 울산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 내 ‘센터에서 하는 일’ 등 참고하여 작성)
 - *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다. 동점자 처리 기준 및 합격자 선정 방식

- (서류전형) 서류심사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선발하여 면접심사 대상으로 함
-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 ① 법정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
 - ③ 서류·면접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

4. 시험 일정

가. 시험공고: 2026. 8. 5.(수)

나. 원서접수: 2026. 8. 12.(수) 09:00 ~ 2026. 8. 14.(금) 18:00까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2026. 8. 20.(목)

라.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26. 8. 20.(목) ~2026. 8. 21.(금) 18:00까지

마. 면접시험일: 2026. 8. 25.(화)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바. 최종 합격자 발표일: 2026. 8. 27.(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청년인재DB(www.2030db.go.kr),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www.gojob.go.kr)에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8. 12.(수) 09:00 ~ 2026. 8. 14.(금) 18:00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내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나.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인턴지원서 각 1부(필수제출)
- 정책제안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제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필수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정책제안서(필수 제출)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필수 제출)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근무조건

- 가.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나. (계약기간) 2026. 9. 1. ~ 2026. 12. 31.
- 다. (보 수) 월 2,156,880원(정액급식비 160,000원 포함)
- 라.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30일 이상 근무 시 경력증명서 발급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로 (☎052-259-34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